

연금화 확대를 위한 퇴직연금 제도 개선 전략

김성일 박사
(경희대)

본 자료는 김성일의 한국연금학회 2022년 제2차 국제세미나(10.31) 및 한국연금학회·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공동 추계학술대회(12.3) 발표자료를 일부 포함하고 있음

목 차

I. 퇴직연금 연금화 중요성

1. 국민연금 개혁방향
2. 국민연금 모수개혁
3. 국민연금-퇴직연금 연계논의
4. 퇴직연금의 역할

II. 퇴직연금 연금화 현황

1. 퇴직연금 연금화율
2. 퇴직연금 연금화 문제점

III. 퇴직연금 연금화 부진원인

1. 가입자의 제도참여 한계
2. 계약형제도의 문제
3. 중도인출의 문제
4. 수익률 저조 인식의 문제
5. 소득세법의 문제
6. 연금화 환기부족 : 가입자교육실패

IV. 퇴직연금 연금화 전략

1. 수탁자간 경쟁구조 제도화
2. 중도인출 합리적 제한
3. 디폴트보험제도의 도입
4. IRP 세액환급과 연금계좌 적립
5. 연금화 서비스 확충

V. 결론 : 연금화 전략 과제

1. 미래 연금제도 근간으로서 퇴직연금 이미지 제고
2. 기금형 요소가 가미된 지배구조 변경으로 가입자 참여유도
3. 퇴직급여제도의 단일화 조속 추진
4.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급여 수급방안 모색
5. 퇴직IRP 포함 중도인출의 합리적 제한
6. 가입자교육 사업자 위탁 단계적 제한
7. 연금화를 위한 세제정책 개선
8. 가입자 보호와 연금화를 위한 전문자문제도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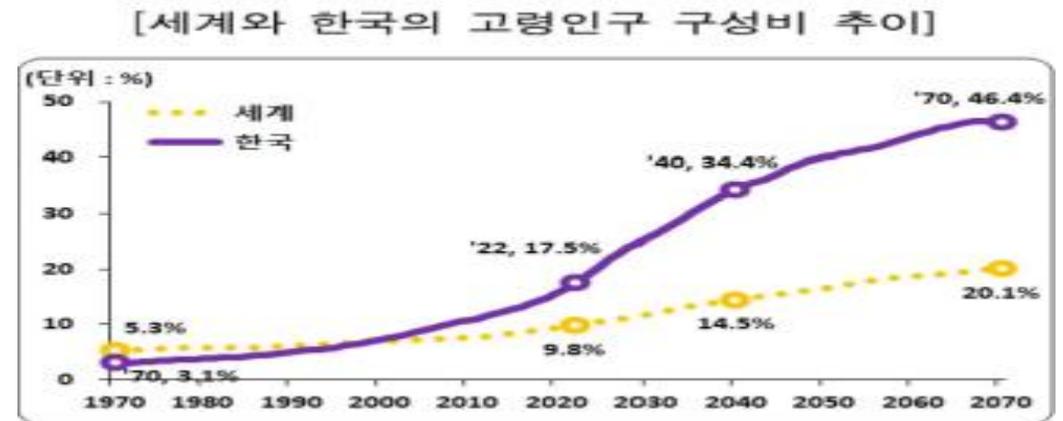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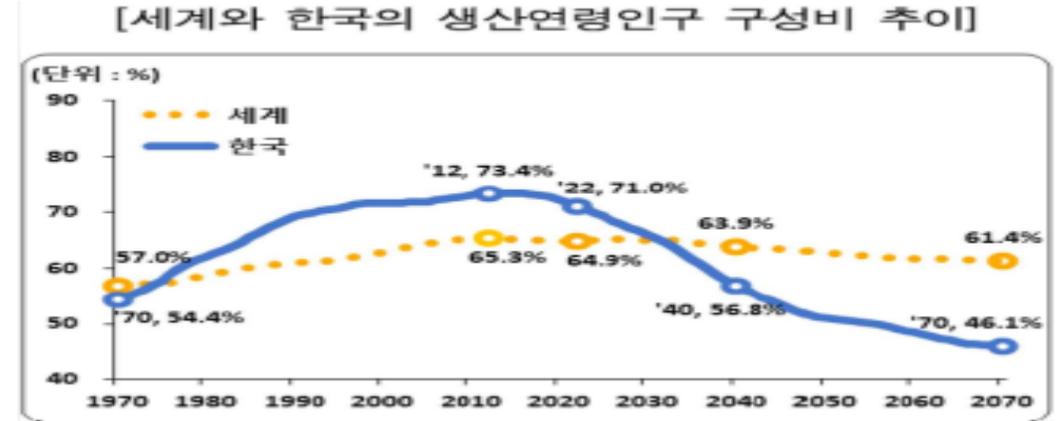


I. 퇴직연금 연금화 중요성

1. 국민연금 개혁의 주요 원칙



윤석명, "100년 후에도 지속가능한 연금제도의 전제 조건들", 한국연금학회 2022년 제2차정책세미나



통계청, 2022. 9

- ▶ 코틀리코프(2011)는 연금간 세대갈등은 젊은이들을 폰지 사기로 내몰고 있음. 정부는 미래의 혜택을 약속하면서 빚 대신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빌리고 있는데 "다음 세대에 떠넘기는 세금도 빚" 이라 주장(중앙선데이, 2011.08.07)

- 모수개혁 방법론 : 이전 4번의 연금개혁 때 모수개혁 방안은 매번 고안됐고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등을 어느 정도 비율로 결정할지 정부와 국회가 결정하면 되는 상황
- 개혁 지연의 핵심 이유 : 국민 저항과 표를 의식해 결정을 미루는 정치권의 무책임
- 18대 국회에서도 국회는 연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기초연금 개혁을 내세웠고 19대 국회에선 '공적 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꾸리기도 했으나 실패
- 한국리서치 조사(2022. 08) : 응답자의 66%는 현재 보험료율이 부담된다고 답했고, 절반 이상은 '월 소득의 10% 미만'만 보험료로 낼 의향 보임. 게다가 경기침체로 가처분소득이 줄어들고 극 초 저출산(extremely ultra low fertility)으로 세 부담이 이중 삼중으로 가중되면 저항 심리는 훨씬 커질 것임

- 어느 정부나 연금개혁은 '미움 받을 용기' 필요
- 현 정부는 모수개혁에 관해 복지부를 중심으로 1개 안을 만들어 추진하겠다는 입장
- 현 정부가 공약한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가 사실상 파기됨

출처 : 연합인포맥스(<http://news.einfomax.co.kr>)

▶ 1.3 국민연금-퇴직연금 연계 논의

- 연금 개혁은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문제 뿐 아니라 연금제도 재구조화까지 나아가는 더 큰 틀의 개혁이 필요 : 다양한 제도들의 관계와 역할, 각 제도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
(정해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적연금연구센터장)
- 국민연금만 모수개혁으로서 '적정 보험료'와 '적정 급여'를 설정하는 것은 연금개혁 논의에서 아무 의미가 없으며, 기초·국민·퇴직연금의 역할을 명확히 한 상태에서 종합적 차원에서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수준이 정해져야 함. 퇴직연금이 중장기적으로 어떤 제도여야 하는지 합의 필요.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들이 국민연금 보험료율(9%)에 육박하는 8.3% 이상의 보험료율을 납부하고 있음에도 일시금 수령, 중간정산, 사업장 파산 시 수급권 불안정, 가입대상 제한으로 유의미한 노후소득보장 수단으로 기능하지 못함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퇴직연금을 강화해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한 축을 담당하는 국민연금 보완장치로 개편하는 것도 좋을 것 : 퇴직연금 제도가 소득비례연금으로서 18~20%의 소득대체율을 제공하면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 기능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될 수 있는 바탕이 됨. 퇴직연금 수급률은 국민연금과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낮은 수준, 퇴직연금이 공적연금으로 역할을 하게 하려면 현재와 같이 퇴직연금을 시장에 맡겨 두어서는 안 됨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

- 연금개혁에 대한 철학과 목적이 불명확 : 최소한 100년을 내다 보는 연금제도 재설계 필요
- 연금주체들 간의 캐즘(Chasm) :
 - . 사회복지학적 접근과 자본시장적 접근의 괴리
 - . 정책 입안자들의 연금개혁에 대한 근시안적 접근
 - . 국민 참여 소통 부족으로 인한 개혁의 공포가 이해관계자들간 만연
 - . 극복이 거의 불가능한 한국의 극 초 저출산(extremely ultra low fertility) 상황에 대한 사실 인정 회피
- 국민연금은 모수개혁의 늪/퇴직연금은 연금화 저조의 늪에 빠짐
- 미래 연금은 국민의 자기책임원칙(the principle of self responsibility)와 정부의 자유주의적 개입(libertarian paternalism)을 여하히 조절할 것인가의 공감대 필요
- 결국, 퇴직연금의 연금화 강화 방향으로 연금 개혁이 나아가야 함
- 미래에 예정된 극 초 저출산국의 저주를 회피하고, 국가 재정 부담이 적은 연금 개혁의 핵심은 [퇴직연금 연금화 제고 성공]에 달려 있음

Ⅱ. 퇴직연금 연금화 현황

유형별 퇴직급여 수령 현황

(단위: 좌, 억원, %)

구분	연금수령		일시금수령		합계	
		비중		비중		비중
계좌수(A)	16,984	4.3	380,286	95.7	397,270	100.0
금액(B)	32,028	34.3	61,398	65.7	93,426	100.0
계좌당 금액(B/A)	1.89	-	0.16	-	0.24	-

출처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통계, 2021년

- 퇴직연금 연금화 현황을 보면 계좌수(가입자) 기준으로 연금 수급자격 대상자 중 4.3%만 연금화/ 금액기준 34.3% 연금화로 너무 차이가 많이 남
- 원인은 일시금 수령 계좌의 평균 금액이 1천6백만원에 지나지 않아 연금화 의미나 의지 상실

유형별 퇴직급여 수령 현황

(단위: 좌, 억원, %)

구분	연금수령		일시금수령		합계	
		비중		비중		비중
계좌수(A)	16,984	4.3	380,286	95.7	397,270	100.0
금액(B)	32,028	34.3	61,398	65.7	93,426	100.0
계좌당 금액(B/A)	1.89	-	0.16	-	0.24	-

- 특히, 위의 통계결과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적립금 규모가 클수록 연금화가 많이 되는 현상은 퇴직연금제도의 [빈익빈-부익부] 심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결과로 보여짐.
- 적립금이 클수록 세제 혜택이 크며, 적립금이 클수록 퇴직연금사업자들의 연금관련 서비스를 더 많이 받을 것이며, 적립금이 클수록 가입자의 관심도도 높을 것임
- 적립금이 소규모인 가입자들에 대해서는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나 현실은 사업자로부터 외면 받으며, 금년 중기 기금형이 도입되었으나 과거는 중소기업이 소외되었으며, 정보비대칭은 적립금 규모가 적을수록 더 심화되는 현상이 일반화 됨.

Ⅲ. 퇴직연금 연금화 부진 원인

핵심 개선 사항

가입자 제도 활용 동참
(부분기금형/전문가자문제도 등)

수익률 제고

퇴직일시금 세제혜택 재검토

퇴직급여제도 단일화

1년 미만 종사자 퇴직급여 지급 확대

IRP 세액공제 환급 적립

가입자교육 실효화

퇴직연금 연금화 제고 모형

개선 결과

적립금 규모 확충

연금화 세제 혜택 제고

연금화 필요성 고취

궁극적인 목표

연금화
제고

퇴직연금 도입 주도자

구분	%	주도형태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의해	11.7%	사용자 주도 58.0%
사용자가 주도한 편	46.3%	
노사가 대등하게	37.3%	노사 주도 37.3%
근로자가 주도한 편	3.9%	근로자 주도 4.6%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의해	1.3%	

주)퇴직연금 도입기업 300개 대상, 출처 :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2011)

제도유형별 도입 주도자

구분	사용자가 주도	노사가 주도	근로자가 주도
DB	64.3	34.3	41.2
DC	55.8	36.4	7.7
DB&DC	41.2	52.9	5.9

주)퇴직연금 도입기업 300개 대상, 출처 :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2011)

- 퇴직연금의 지배구조가 사용자와 사업자간 계약에 의해 성립하여 제도 도입에 대한 동의만 하면 제도 운용 과정에 근로자의 참여가 사실상 배제되어 왔음.
- 퇴직연금제도가 근로자 복지제도로 자리매김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간 소통 단절현상 심화

▶ 3.2 계약형제도의 문제

문 제	내 용
수탁자 책임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자와 사업자의 이해 결탁과 상호 포획상태로 인한 가입자 이익 최선 책임 상실 - 퇴직급여법 상 사용자의 지위는 두드러지나 수탁자로서의 책임은 거의 없는 편임 - 사용자의 관계사 밀어주기식 계약을 해도 근로자로서는 마땅한 거부 방법이 없음 - 퇴직연금 규제감독체제에서 사용자의 근로자 이익 추구 책임을 추궁할 방법이 없는 상황
감시기능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탁자 감시기능이 정책당국에 위임되어 사적 의사결정관여가 사실상 차단됨. - 외부감사인 : 별도의 관련 규정 부재 → 전문적 자문 한계 - 내부감사 : 내부감사 관련 규정 및 내용 부재 → 내부 견제기능 미작동
시장기능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가 계약당사가 아니므로 근로자를 위한 경쟁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원리금보장상품 금리책정이나 수수료 책정에서 사업자들의 묵시적 담합 가능성이 높음 -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사업자간 계약 이행 과정을 알 수 없어 제도 소외자로 전락하여 정보 비대칭의 시장실패(market failure)가 만연함

근로자 제도
무관심과 참
여 노력이
제고될 수
없어 결국
연금퍼즐 현
상으로 나타
나는 측면이
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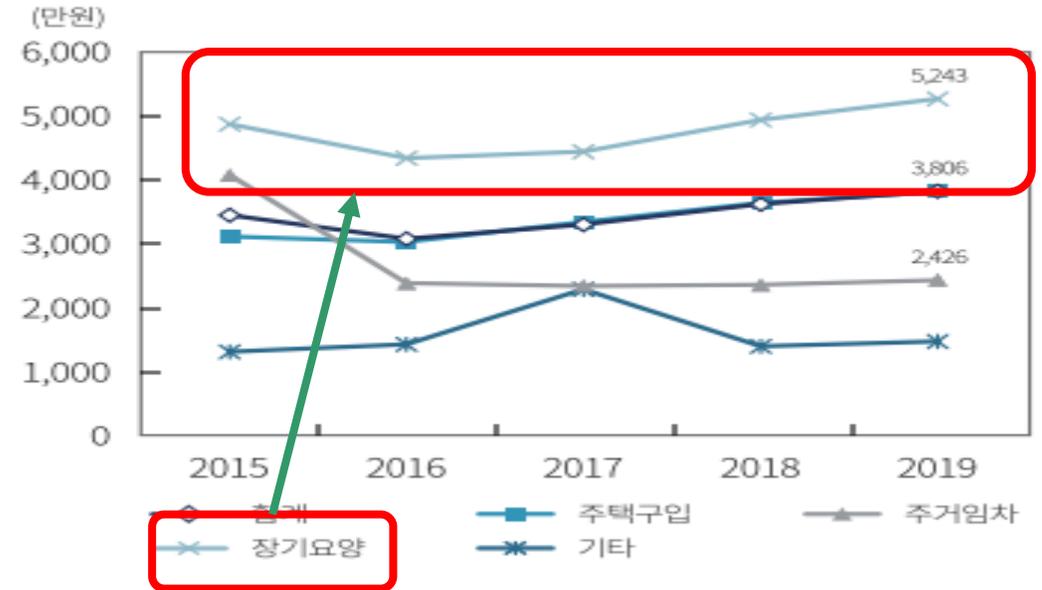
▶ 3.3 중도인출의 문제

(a) 인원과 금액



자료: 통계청

(b) 1인당 중도인출 금액



- 2019년 중도인출 인원은 전년 대비 1.8% 증가한 73,000 명이고, 인출금액은 7.6% 증가한 2.8조원 으로 나타남 ((a) 참조).
- 인출 사유별로 보면 장기요양 27,430명(1조 4,382억원), 주택구입 22,023명(8,382억원), 주거임차 16,241명 (3,940억원) 순
- 1인당 평균 인출금액은 3,800만원이며, **장기요양의 경우 5,200만원으로 평균 인출금액이 가장 높았으며**, 주택 구입 및 주거 임차의 평균 인출금액은 각각 3,800만원, 2,400만원이었다((b) 참조)(홍원구 2021).

제도유형별/운용방법별 장기수익률 현황

(단위:%)

권역	구분	DB	DC	개인형IRP	전체
전체	5년	1.67	2.37	2.36	1.96
	10년	2.22	2.73	2.49	2.39
원리금보장형	5년	1.64	1.50	1.52	1.59
	10년	2.18	2.35	1.93	2.19
실적배당형	5년	3.33	5.79	5.51	5.18
	10년	3.27	4.40	4.20	4.09

※ '21년 기준 과거 5년, 10년간 수수료 차감 후 연환산 수익률 출처 :고용노동부, 2021년 퇴직연금 통계

- 퇴직연금의 핵심이 가입자들의 장기적인 자산운용을 통한 수익률제고라고 할 때 가장 적합한 통계치는 DC/ 개인형 IRP의 실적배당형 장기투자수익률임.
- DC(5년수익률 : 5.79%/10년 수익률 4.40%), 개인형 IRP(5년수익률 : 5.51%/10년 수익률 4.20%)로 낮다고 볼 수 없음
- 퇴직연금 수익률이 저조하다는 편견이 더 문제임.

▶ 3.5 소득세법의 문제

- 일시금과 연금간 세액 및 세율차이가 크지 않은 이유는 소득세법 상 적립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더라도 적용되는 공제의 종류가 많고, 공제혜택의 액수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일시금 수령 시 적용되는 세금부담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임
- 결과적으로 현 행 소득세법에 의해 결정되는 세금부담은 일시금으로 수령하고자 하는 은퇴자를 연금수령 으로 전환할 만큼의 유인을 제공하기는 어려움

일시금과 연금수령 시 세율 차이

(적립금 규모: 2억 원/ 3억 원, 근무기간: 10년, 20년, 30년, 40년 가정)

(단위 : 원, %)

근속연수	10년 근무	20년 근무	30년 근무	40년 근무
적립금(A)	200,000,000			
일시금 세액(B)	20,442,500	9,535,000	6,667,500	4,640,000
일시금 세율(B/A*100)	10.2	4.8	3.3	2.3
연금수령 세액(C)	14,309,750	6,674,500	4,667,250	3,248,000
연금수령 세율(C/A*100)	7.2	3.3	2.3	1.6
수령방법별 세액 차이(B-C)	6,132,750	2,860,500	2,000,250	1,392,000
수령방법별 세율 차이((B-C)/A*100)	3.1	1.4	1.0	0.7
적립금(A)	300,000,000			
일시금 세액(B)	42,157,000	22,636,000	13,807,500	10,870,000
일시금 세율(B/A*100)	14.1	7.5	4.6	3.6
연금수령 세액(C)	29,509,900	15,845,200	9,665,250	7,609,000
연금수령 세율(C/A*100)	9.8	5.3	3.2	2.5
수령방법별 세액 차이(B-C)	12,647,100	6,790,800	4,142,250	3,261,000
수령방법별 세율 차이((B-C)/A*100)	4.2	2.3	1.4	1.1

- 2억원의 경우 근무연수에 따라 3.1~0.7)/ 3억원의 경우 4.2~1.1% 차이로 미미함.

- 금액이 크고, 장기근무에서 차이가 거의 없으므로 이는 반대로 되어야 연금화 제고를 유도할 수 있을 것임

출처 : 김대환·성주호, 퇴직연금 연금수령을 위한 개정된 소득세법 진단과 개선방안, 연금연구 제7권 제2호., 2017. 12

▶ 3.6 자산운용 자문기능 부재

- 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은 퇴직연금사업자의 연금 가입자에 대한 대리인 문제(agent problem)을 더욱 더 심화시킬 잠재력을 확대시킬 수 있음.
- 중퇴 기금형 제도는 중소기업 가입자에 대한 제도활용과 기금운용에서의 정보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을 확대할 우려가 있음.
- 가입자들은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현재 인식은 울며 겨자먹기식 [불만족 속 원금보존]인데 사전지정운용제도와 중퇴기금형은 위험을 직·간접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환경을 조성하므로 **가입자들의 이익보존을 위한 유·무형적 장치가 요구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약칭: 퇴직급여법)

[시행 2022. 4. 14.] [법률 제18038호, 2021. 4. 13. 일부개정]

다.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운영에 따른 가입자에 대한 급여는 지급된 것으로 본다.

제21조(적립금 운용방법 및 정보제공)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고, 반기마다 1회 이상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② 퇴직연금사업자는 반기마다 1회 이상 위험과 수익구조가 서로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방법별 이익 및 손실의 가능성에 관한 정보 등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선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22. 4. 14.] [대통령령 제32575호, 2022. 4. 13.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27조(모집업무의 위탁범위) 별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5. 12. 15., 2019. 10. 29.>

1.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거나 가입한 자(설정하거나 가입하려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퇴직연금제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는 업무
2. 사용자 또는 가입 예정자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소개하거나 중개하는 업무
3.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입 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적립금 운용방법의 설명 또는 관련 정보의 전달 업무,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적립금 운용방법에 대한 지시를 전달하는 업무
4.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질의사항, 퇴직연금사업자 등의 답변을 전달하는 업무
5. 그 밖에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가입하도록 권유하는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제도별 위탁사업장의 교육방법

구분		집합	서면	이메일	온라인	기타	합계(개)
전체	생보	715	4,219	11,457	489	645	17,525
	손보	28	1,504	1,650	22	0	3,204
	은행	2,617	127,028	53,012	1,692	4,642	188,991
	증권	204	4,157	5,599	11	3,082	13,053
	합계	3,564	136,908	71,718	2,214	8,369	222,773
	참여율	1.60%	61.50%	32.20%	1.00%	3.80%	100%
DB	생보	308	1,583	3,706	318	487	6,402
	손보	8	478	900	5	0	1,391
	은행	1,330	44,988	25,976	966	1,558	74,818
	증권	68	981	683	1	692	2,425
	합계	1,714	48,030	31,265	1,290	2,737	85,036
	참여율	2.00%	56.50%	36.80%	1.50%	3.20%	100%
DC	생보	407	2,518	6,674	165	158	9,922
	손보	20	1,007	687	17	0	1,731
	은행	1,096	71,262	21,306	684	1,924	96,272
	증권	136	3,035	4,709	10	2,377	10,267
	합계	1,659	77,822	33,376	876	4,459	118,192
	참여율	1.40%	65.80%	28.20%	0.70%	3.80%	100%
사립 IRP	생보	0	118	1,077	6	0	1,201
	손보	0	19	63	0	0	82
	은행	191	10,778	5,730	42	1,160	17,901
	증권	0	141	207	0	13	361
	합계	191	11,056	7,077	48	1,173	19,545
	참여율	1.00%	56.60%	36.20%	0.20%	6.00%	100%

홍경식,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활성화 방안」, 퇴직연금연구회 제2차 회의자료, 고용노동부, 2016.



IV. 퇴직연금 연금화 전략

▶ 4.1 수탁자간 경쟁구조 제도화=> 수익률향상과 가입자 서비스제고와 밀접

- 기금 선택권을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시장모델 필요 (호주 슈퍼에뉴에이션 소매형 기금 벤치마킹필요)
- 현재 자산관리업무를 자산운용업무로 확대 전환 모색
- 시장 모델에서는 경쟁에 의한 시장규율이 존재하므로 다른 모델 보다 더 나은 '위험-수익' 구조를 지니면서도 저렴한 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함
- 연금 수탁자는 주로 제도의 운영(administration), 자산의 보관(custody), **연금 자산투자의 조율자(coordinator) 역할을 담당함.**

호주 슈퍼에뉴에이션 기금 종류

구분	주요 내용
기업형기금	- 단일 또는 관련된 복수 사용자가 운영하는 In-House 방식 연기금
산업형기금	- 특정산업에 소속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용자와 노조가 공동 참여하는 연기금 → 예시 : UniSuper(건강), CBUS(건설 및 건축), Host Plus(병원)
공적기금	- 호주연방, 주/지방정부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운영
소매형기금	- 은행과 생보사의 자회사인 자산관리회사가 운영하는 연기금 → 영리조직 운영, 수탁위원회 중심 의사결정, 집합투자방식 자산 운용
자기관리기금	- 근로자 또는 은퇴자가 연기금을 설립하여 운영(Do-It-Yourself) → 부유층이 가계단위로 설립, 최대 4인까지 가입되나 실제로는 1~2인 대다수

출처 ; 이경희, 호주퇴직연금제도 현황과 시사점, 보험연구원에서 재인용, 2018

■ 중도인출을 위급사항에 국한하는 조치가 필요하고, 담보대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함.

해외와 한국의 중도인출 비교

구 분	해 외	한 국
허용범위	- 특별한 경우(위급사항)로 엄격히 제한 1) 호주 : 영구장애, 사망 2) 미국 : 영구장애 사망 3) 영국 : 건강상 퇴직, 기대여명 1년 이하	- 중도인출 사유가 상대적으로 광범위하고 느슨함 1) 신규주택구입, 임차보증금, 요양비용, 파산선고, 천재지변 등 2) 위급사항이라고 볼 수 없음
특징	- 엄격한 중도인출 규제 - 노후재원확 최우선	- 비위급사항도 중도인출 가능
보완기제	- 호주의 디폴트보험	- 담보대출(기능상실) 현실화



- 담보대출은 퇴직급여에 대한 담보권 설정 및 실행, 상계처리 세부규정, 담보대출 금리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아 일시적인 자금수요충족 기능을 상실하여 중도인출에만 의존할 수 밖에 없음

■ 디폴트보험 필요 이유

- 중도인출 제한에 따른 필요 자금 활용
- 호주 MySuper의 디폴트 보험 중 소득보상보험(장기, 단기) 중심 도입 필요

한국형 디폴트보험(안)

제공형태	내용
사전지정운용제도 제공 사업자 제공	- 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 제공 퇴직연금 사업자는 디폴트방식 보험상품을 제공
계약형태	- 수탁자가 보험계약자이며, 사전지정운용제도 가입자가 보험수익자
보험료 납부방법	- 수탁자가 일별 보험료를 가입자계좌에서 월 단위 공제하여 생보사에 납부 → 사고시 보험금 청구
선택방법	- 소득보상보험은 가입자의 거부 의사로 가입이 배제되는 옵트 아웃(Opt-Out) 방식 → 옵트 인(Opt-In) 방식 운영 시 엄격한 언더라이팅 적용되어 비용상승으로 보험료 측면에 서 경쟁력 상실 - 사망보험 및 영구장애보험은 옵트 인 방식 고려
기타	- 보험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필요

▶ 4.4 IRP 세액 환급과 연금계좌 적립

- 우리나라는 개인형 IRP+연금저축을 합하여 최대 900만원(연금저축만으로는 700만원)을 대상으로 세액공제함 : 2023년부터 급여근로자 나이 상관없이 세액공제하게 되는데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액 4,500만원) 근로자는 15%(900만원 기준, 135만원), 5,500만원 초과(4500만원) 대상자는 12%(900만원 기준, 108만원)를 세액공제로 적용함.
- 개인형 IRP의 폭발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세액공제 형태로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임 → 세액공제는 세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된 세액에서 일부를 깎아주는 개념으로써 가입자들이 연금적립금으로 확충하기 힘들게 만드는 구조임 → 연금세제 지원은 본인의 연금계좌에 환급되지 않고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액이 노후자산에서 누수되고 있음.
- 우리나라도 현행 세액공제액을 계좌환급하여 노후자산을 축적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호주의 매칭보조금(Super Co-Contribution: SCC) 처럼 가입유인을 제고하는 정책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현행 세액공제 수준을 높여 가입유인을 제고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세액공제액은 연금자산에서 누수되지 않도록 세액환급금 제도와 같이 연금계좌에 환급되도록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소득인출형연금을 허용하여 급부방식을 보다 다양화하고 이들 방식(연금, 일시금, 소득인출형 연금) 간의 상호조합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둘째, 가입자 니즈변화를 반영한 옵션가미형 연금상품 제공을 통해 연금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셋째, 퇴직연금 적립금의 인출범위를 확대하여 연금해지를 방지하고 일시금에 비해 연금수령 시 세제혜택이 보다 크도록 개선

넷째, 연금화 서비스 차원에서 디폴트 보험, 담보대출, 부분인출 등을 번들화하는 유연한 상품 구성이 가능하게 함



V. 결론 : 연금화 전략 과제

연금화 전략 과제 1

[미래 연금제도 근간으로서 퇴직연금 이미지 제고]

- 퇴직연금제의 활용에 대한 올바른 인식제고
- 퇴직연금 수익률 편견 극복
- 미래 연금제도로써 퇴직연금제 활용 대 국민 의사소통

연금화 전략 과제 2

[기금형 요소가 가미된 지배구조 변경으로 가입자 참여유도]

- 기금형 제도도입 보다 계약형제도 보완으로 사업자간 수익률 및 서비스 경쟁유도
- 기금 선택권 강화를 통한 시장 경쟁 유도
- 계약형에서 수수료기반에서 기금형에서의 성과 기반 자신운용

연금화 전략 과제 3

[퇴직급여제도의 단일화 조속 추진]

- 퇴직연금제도로 단일화됨으로써 적립금 확충 가능
- 제도 단일화를 통한 연금화 유도정책 다양화 가능
- 보편적 강제적 퇴직연금제로서 사각지대 최소화 가능

연금화 전략 과제 4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급여 수급방안 모색]

- 대법원 판례로 퇴직급여가 임금후불이라면 1년 미만 미지급은 문제
- 1년 미만도 퇴직급여 지급과 일시금 인출제한을 동시에 모색하여 연금화 유도

연금화 전략 과제 5

[퇴직IRP 포함 중도인출의 합리적 제한]

- 퇴직급여제도 단일화와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급여지급과 연계 합리화 필요
 - 중도인출 제한을 위한 디폴트 보험활용방안 필요
- 퇴직 IRP 일시금 인출이 제한됨으로써 적립금 확충 가능성 높아짐

연금화 전략 과제 6

[가입자교육 사업자 위탁 단계적 제한]

- 가입자교육을 통해 연금화 필요성과 제도활용 지식 제고 필요
- 300인 이상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사내 혹은 가입자교육전문기관 활용 필요

연금화 전략 과제 7

[연금화를 위한 세제정책 개선]

- . 일시금 수급과 연금 수급과세 체계 개선
- . IRP 세액공제 적립금으로 환급방안 시급
- . 연금 수급시 세제 단순화 및 합리화 필요

연금화 전략 과제 8

[가입자 보호와 연금화를 위한 잔문자문제도 도입]

- . 해외 퇴직연금 자문제도 벤치마킹
- . 모집인제도 심화 및 확대

참고문헌

- 1) 김대환·성주호(2017), 퇴직연금 연금수령을 위한 개정된 소득세법 진단과 개선방안, 연금연구 제7권 제2호.
 - 2) 김성일(2021), 사적연금활성화를 위한 퇴직연금연금화의 장애요인 규명과 극복방안, 한국연금 학회 2021년 추계학대회.
 - 3) 김성일(2022), “호주 수퍼에뉴에이션제도 벤치마킹을 통한 퇴직연금 역할 제고 방안”, 한국연금학회 2022년 제2차 국제세미나.
 - 3) 류건식(2016), 퇴직연금의 연금퍼즐현상과 과제, Kiri 고령화리뷰 Monthly 제7호.
 - 4) 윤석명(2022), “100년 후에도 지속가능한 연금제도의 전제 조건들”, 한국연금학회 2022년 제2차정책세미나
 - 5) 이경희(2018), 호주퇴직연금제도 현황과 시사점, 보험연구원
 - 6) 홍경식(2016),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활성화 방안」, 퇴직연금연구회 제2차 회의자료, 고용노동부
 - 7) 홍원구(2021), 주택 관련 중도인출이 퇴직소득에 미치는 영향, 이슈보고서 21-26, 자본시장연구원.
- 통계청 퇴직연금 통계, 2020년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통계, 2021년
 - 신문(<http://www.sisanews.kr>), 2022. 09. 16

E. O. D.